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,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 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(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)

- 1)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을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으로 확대

3. 의견제출

이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5.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녹색건축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

- 전자우편 : manfish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74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(전화 044-201-3772/475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